

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장문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7명의 위원 구성 및 윤리강령·행동강령 위반심사 기능(안 제2조)

나.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)

다. 위원회 개최 알림, 심문, 발언,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
라. 위원회 제척과 회피(안 제10조)

마. 윤리심사 결과 본회의 보고 및 알림(안 제11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

○ 규칙안 주요내용은

안 제2조에서는 7명의 위원 구성 및 윤리강령·행동강령 위반심사 기능
안 제4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개최 알림, 심문, 발언,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

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제척과 회피

안 제11조에서는 윤리심사 결과 본회의 보고 및 알림사항을

각각 규정하였으며

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 참고자료: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